

청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6544(본소), 2019나1655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반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6544(본소), 2019나16551(반소)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7가단11156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관희, 이지훈

변론 종결 2020. 7. 9.

판결 선고 2020. 8. 20.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7가단111567(본소), 2017가단114580(반소)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참고도 표시 58, 59, 6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위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참고도 표시 10, 58, 59, 60, 53,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0㎡를 인도하고,

3) 50만 원 및 2017. 1. 1.부터 위 2)항 기재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연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참고도 표시 55, 4, 5, 56, 57, 7, 54, 5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에 관하여

1) 2009.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승낙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 2009.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피고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 부분 10㎡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9. 10. 7.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피고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9. 10. 7.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 C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원고는"을 "원고 A은"으로, 제10면 제17행의 "없고"를 "않고"로, 제11면 제9행의 "(이하 '제2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이하 '제2토지 부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1심판결 제7면 '2. 원고들의 본소 펜스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제1토지 중 위 'ㄹ' 부분 50㎡를 그 용도대로 사용·수익한 바 없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고 피고 소유의 제3토지, K 토지와 함께 위 'ㄹ' 부분 50㎡를 점유해 왔고, 피고 스스로도 도로로 단절되어 이전받기로 한 제1토지 등 위에 도로를 따라 철조망을 치고 조경수를 심고 조경석을 쌓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ㄹ' 부분 50㎡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태환

판사류연중

판사이성기

별지

1) 피고는 2019. 7. 16.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별지3 피고 도면을 첨부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으나, 별지3 피고 도면에 표시된 점과 선은 측량감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진에 임의로 표시한 것이어서 위 반소 청구취지의 (가), (나) 부분의 위치와 면적은 그 자체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위 (가), (나) 부분은 각각 별지2 참고도 표시 11, 72, 71,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0㎡와 별지2 참고도 표시 1, 72, 73, 6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1㎡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를 별지2 참고도의 위 각 해당 부분에 관한 청구로 선행한다.